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08회 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검 토 보 고 서



2024. 11.

기획재경위원회 전문위원

#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4. 11. 28.

기획재경위원회

##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임미연 의원 등 8명(강한곤, 권숙자, 이영빈, 김장관, 도하석, 서보영, 김기열)
- 발의일자: 2024. 11. 6.(수)
- 회부일자: 2024. 11. 6.(수)
- 검토기간: 2024. 11. 6.(수) ~ 11. 15.(금)

## 2. 제안이유

- 상위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근거 조항과 관련 용어 등을 정비하고, 동물등록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근거 조항과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안 전체)
-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
- 등록대상동물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

#### 4. 참고사항(관계법령 등)

-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
  - 「동물보호법」 제2조 및 제15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 비용추계서: 비대상
- 입법예고(2024. 11. 6. ~ 11. 17.)결과: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2022. 4. 26. 전부개정, 2024. 4. 27. 시행)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2023. 4. 27. 전부개정, 2023. 12. 14. 시행)에 따라 조례의 근거 조항을 정비하고, 등록대상동물 및 관련 사항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 우리구 동물등록 현황

연도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RFID 칩)종류			합계
	내장형		외장형	
	개	고양이	개	
2022	759	151	1,822	2,732
2023	624	208	1,457	2,289
2024. 10월말	523	132	1228	1,883

- 등록대상: 2개월 이상의 개(고양이는 선택사항, 내장형만 가능)

-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안 제5조 및 안 제6조를 신설하여 등록대상동물, 등록 및 등록대행,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중 맹견의 출입금지 시설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로 신설하였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려가구의 지속적인 급증에 따른 동물복지 및 안전 사고 예방과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실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반영한 것으로,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고 종합적인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관계 법령】

## □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 가. 포유류
  - 나. 조류
  - 다.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2.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유실·유기동물”이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4. “피학대동물”이란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을 말한다.
5. “맹견”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
  - 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
  - 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6. “봉사동물”이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한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7.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8.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遺棄)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9.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기질평가”란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및 소유자등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 대상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11. “반려동물행동지도사”란 반려동물의 행동분석·평가 및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12. “동물실험”이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을 말한다.

13. “동물실험시행기관”이란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이하 “등록동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2. 등록동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③ 등록동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중 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을 실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그 사실을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동물등록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신고한 경우
2. 등록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이나 외국인등록사항이 말소된 경우
3. 등록동물의 소유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사항 및 방법·절차, 변경신고 절차, 등록 말소 절차, 동물등록대행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현행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생명존중 풍토를 정착시켜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
2. “유실·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사람으로부터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3. “반려동물”이란 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4. “소유자 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의 국가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5년마다 동물복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영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동물복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대구광역시 달서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의무) ① 주민은 누구든지 동물복지 실현과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동물복지를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법 제8조에서 규정한 동물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 ① 소유자 등은 동물을 사육·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동물의 습성을 이해함으로써 최대한 동물 본래의 습성이 유지되도록 사육·관리하고 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위하여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동물의 소리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이웃을 배려하는 생활환경 정착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동물 학대행위의 금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5.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제7조(맹견의 관리)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맹견의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 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제8조(맹견의 출입금지 등) 법 제13조의3에 따라 맹견의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중등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제9조(동물복지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이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동물복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필요한 사항
2.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가치실현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동물복지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동물복지 실태자료를 수집·분석

하고 그 통계를 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동물복지 실태자료를 수집·분석·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조사·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 등의 실시) ① 구청장은 동물복지와 생명존중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에 대한 교육·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행사 등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9. 21.)

제12조(동물의 관리 등)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할 수 있는 비닐봉지, 장갑 등을 휴대하여 동물이 배설할 경우 배설물을 수거하여야 한다.
2. 사육·관리하는 동물이 주택의 울타리 밖으로 주인 없이 나돌아 다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이 장애인과 함께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의2(편의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하여 공원 등에 반려동물을 위한 배변봉투함, 음수대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및 관리를 동물보호단체, 민간사업자 등에게 대행할 수 있다.

제14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 명예감시원에게는 명예감시원 신분증이나 그 밖의 신분을 표시할 수 있는 증표(조끼, 완장 등)가 되는 것들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해 구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구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3.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 위탁계약 사업 참가자 등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업무담당 과장
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3.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영 제5조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외부위원
6.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서 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7.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서 동물보호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단체 또는 기구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그 밖에 동물보호 관련 연구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자문이 필요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9조(표창) 구청장은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공적이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